

'23년 3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(E-7-4) 제도 안내

1. 제도 개요

- 4년 이상 E-9, H-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*에게 장기체류(E-7-4) 비자 전환 허용
 - * 소득, 자격증, 연령, 한국어 능력(이상 기본항목), 자산, 경력, 추천(선택항목) 등의 요건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-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,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'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'*(제조업: 총 650명/년) 운영
 - *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,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

2. 고용부 추천 쿼터(3분기 325명) 대상 선발 기준

- ◆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(외국인) 중 가·감점 요건을 반영한 총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
- ◆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

가.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: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

- ① 뿌리산업(뿌리산업증명서 제출)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(25), 식료품 제조업(10),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(22), 가구 제조업(32), 섬유제품 제조업(13), 선박 및 보트 건조업(311) 등 7개 제조업종
-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
- ③ E-7-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
 - *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

나.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

- E-7-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(법무부) 최저기준* 이상이면서,
 -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(E-9)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
 - * ① 산업기여가치(연간 소득) 10점 이상 & 총 52점 이상, 또는 ② 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& 총점 72점 이상[붙임2 참고]
- ** 법무부는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
-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중 사업장 당 1명 신청 가능

다.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(외국인) 중 우선순위

○ (가점)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*,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**

*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

⇒ <30인 미만> 신규채용 1명 당 1점(최대 5점), <30인 이상> 신규채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의 2~5%(1점), 5~9%(2점), 9~12%(3점), 12~15%(4점), 15% 이상(5점)

** 신청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: 5~6년(1점), 6~7년(2점), 7~8년(3점), 8년 이상(4점)

○ (감점)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(1건당 -1점)

*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건 수, 외고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, 과태료 및 고용제한 처분이 확정된 건 수

○ (동점 사업장) 동점 사업장 발생 시,

① 감점이 없는 사업장 → ② (①이 같은 경우)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→ ③ (②가 같은 경우)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

3. 신청 절차

○ 신청 기간: '23. 7. 24.(월)~7. 28.(금)

○ 접수처 및 제출서류: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[붙임1], ②외국인등록증·여권 사본 및 ③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

(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, 우편접수 불가)

○ 문의: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

○ 선정절차: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(8.7.) →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(8.7~;수사-선착순, 접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) → 접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·통보(법무부)

※ 고용부 추천 쿼터(650명) 마감 시 법무부 정기선발 신청 시에도 활용 가능

○ 추천서 유효기간: 추천 대상자의 ①취업활동기간 만료일(특례 재입국 후 3년)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, ②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(3년+1년10개월)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까지, ③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까지 유효함

붙임 1

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(E-7-4) 추천 신청서

E-9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(E-7-4) 추천 신청서

신청인	사업장명	대표자
	소재지	전화번호(팩스)
	사업의 종류	사업자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)

신청요건 확인란 (해당 란에 체크[√]) ※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	• [] 허용업종(또는 뿌리산업)에 해당(업종명:) • [] 신청일 이전 6개월간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• [] 신청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• [] E-7-4 전환일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• [] E-7-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(법무부) 최저기준* 이상[붙임1 참조] * ①산업기여가치 10점 이상 & 총 52점 이상, 또는 ②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& 총 72점 이상
---	--

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

성명	외국인등록번호	국적	여권번호	취업기간 만료일	재입국 후 사업장변경 여부

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(E-7-4)을 위하여 본 사업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
확인한 내국인 구직 기피 기업으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사업주) (서명 또는 인)
신청인(외국인근로자)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외국인등록증 사본 2. 여권 사본 3. 표준근로계약서 사본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, 추천 적격 여부(가·감점 사항 포함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
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숙련기능인력(E-7-4) 점수제 평가 항목

☐ 적용대상

- 체류자격 :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방문취업(H-2)
- 취업기간 : 최근 10년 간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
- 제외 : 형사범, 세금체납자,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

<참고> : 형사범은 벌금형(벌금액 50만원 이상)이상을 말하며,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

☐ 점수요건 : 총 224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

1. 산업기여가치 '연간소득'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
2.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

가. 기본항목 : 최대 95점

1) 산업 기여 가치

◆ 연간소득 : 최대 20점

구 분	3,300만원 이상	3,000만원 이상	2,600만원 이상
배 점	20	15	10

<범례> :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,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(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)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,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

2) 미래 기여 가치

◆ 숙련도 : 최대 20점

구 분	자격증 소지①			기량검증 통과②
	기사	산업기사	기능사	
배 점	20	15	10	10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①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,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“기술·기능분야” 기술자격과 그 외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(현재 STCW 자격증만 인정)

②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)

◆ 학력 : 최대 10점

구 분	학사	전문학사	고졸
배 점	10	10	5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범례> :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

◆ 연령 : 최대 20점

구 분	~ 24세	~ 27세	~ 30세	~ 33세	~ 36세	~ 39세
배 점	20	17	14	11	8	5

<참고> : 만 나이로 계산 (출생일 산입하여 계산)

◆ 한국어능력 : 최대 25점

토픽(TOPIK)			
5급/5단계 이상	4급/4단계 이상	3급/3단계 이상	2급/2단계 이상
20	15	10	5

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			
5급/5단계 이상	4급/4단계 이상	3급/3단계 이상	2급/2단계 이상
25	20	15	10

<참고> : 토픽은 공식점수표(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),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(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음)

나. 선택항목 : 최대 129점

◆ 근속기간 :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

<범례> :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,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,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같음

◆ 보유 자산 : 최대 35점

구 분	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①					국내 자산②		
	1억원 이상	8천만원 이상	6천만원 이상	4천만원 이상	2천만원 이상	1억원 이상	8천만원 이상	5천만원 이상
배 점	15	12	9	7	5	20	15	10

<참고> : ①와 ②간 중복 산정 가능(단, 이 경우 ②는 ①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)

<범례> : ①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
②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(토지/주택/건물)만 해당
①와 ②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

◆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: 최대 20점

구 분	뿌리산업 분야 및 농.축산.어업.조선업.내항상선 분야 ①			일반 제조업, 건설업 분야 등②		
	8년 이상	6년 이상	4년 이상	8년 이상	6년 이상	4년 이상
배 점	20	15	10	20	10	5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범례> : ①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, 농축산어업, 조선업 및 내항상선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

◆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: 최대 10점

구 분	국내 교육경험①		국내 연수경험②	
	학사이상 취득	전문학사 취득	1년 이상	6개월~1년 미만
배 점	10	8	5	3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범례> : ①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

②는 국내 사설기관연수(D-4-6)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

◆ 가점 : 최대 54점

구 분	국내 유학경험 ㉠			관련 중앙부처 추천 ㉡	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㉢	읍, 면지역 근무경력 ㉤		
	석사 이상	학사 이하	전문 학사			4년이상	3년이상	2년이상
배 점	10	5	3	10	5	10	7	5
구 분	사회 공헌 ㉥			납세실적 (300만원이상) ㉦		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㉧		
	표창		사회 봉사			1개월	2개월	3개월
배 점	5		3	5		2	3	4
구 분	인구감소지역 근무경력 ㉨							
	4년 이상	3년 이상	2년 이상					
배 점	5	3	2					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

- <범례> : ㉠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'학위소지' 및 '학력'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(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)
- ㉡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,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
- ㉢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, 가-2-4.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
- ㉤ 읍,면지역 기준 :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, 면지역에 위치할 것 / 어선원,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 없이 승선 경력으로 산정
- ㉥ (훈·포장/표창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(건당 2점, 최대 5점), (자원봉사)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(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-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) : 표창/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(1개만 적용)
- ㉦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
- ㉧ 비전문취업(E-9)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.8.21.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,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(참여여부는 별도 제출 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)
- ㉨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(읍면지역 근무경력 가점과 중복 가능)

다. 감점항목 : 최대 50점

구 분	출입국관리법 위반㉠			기타 국내 법령 위반㉡		
	1회	2회 이상	3회 이상	1회	2회 이상	3회 이상
배 점	5	10	50	5	10	50

<참고> : 항목 간 합산(㉠+㉡)점수를 적용함

- <범례> : ㉠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(처분면제, 과태료 포함)하며,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
- ㉡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

라. 업종.업체별 허용인원

- (공통) 고용 허용인원 산정 시 숙련기능인력(E-7-4)만 산정(다른 취업 비자(다른 E-7 직종 포함) 소지자는 별도 고려하지 않음)하며,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
- (일반 제조업) 국민 고용인원의 20%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
 - 단,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는 국민 고용인원의 30%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
- (건설업) 연평균 공사금액 x 0.1(1억당 0.1명 고용, 소수점 이하는 내림) 내에서 고용 가능
 - ※ (예) 연평균 공사금액이 100억원인 업체: 100(억) X 0.1 = 10명 고용 가능
- (뿌리·농축어업) 국민 고용인원의 30%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.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2명 고용 가능

<참고> 단, 현재 E-9 및 E-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